

별첨. 주요 대선후보 방송·통신·소비자정책 답변내용

1. 소비자권리 보장

1) 소비자 거버넌스 강화

① 가슴기 살균제 피해는 법·제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단순 사고이다.

문제인	반대	제 2의 가슴기살균제 참사 예방을 위해서는 지난 20여 년간 고착화된 화학물질과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의 잘못된 관행 혁파를 위한 구조적 개편 필요. 소비자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적 안전점검의 제도화 필요. 원료물질과 소비자 제품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책임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화학물질 함유 소비자제품에 대한 등록·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일차적 책임을 제조·판매업체에게 부과하도록 하며, 당국에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 부여해야 함
안철수	반대	
심상정	반대	
유승민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슴기살균제 사건은 법령 미비로 살생물제에 대한 안전성 입증 없이 제품의 판매가 가능했기 때문이며, 2006년에 원인미상의 호흡부전 환자들이 발생했고, 2011년에는 중증 폐질환 임산부 7명이 연이어 발생하였으나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결국 2016년 8월 기준, 258명(사망자 113명, 생존자 145명)이 가슴기살균제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 따라서 화학물질의 관리체계 강화, 위해우려제품의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 안전기준을 강화, 해당제품의 성분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전달 및 인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이 피해를 유발한 사업자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을 업무를 이관해, 정부부처 간 정책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 정책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문재인	기타	소비자 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깊이 공감. 정부조직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뜯어고쳐지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은 향후 장기간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함. 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최대한 여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안철수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목적은 공정경쟁의 보장과 소비자권익의 보호임. 현재 공정위의 기능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다소 미흡한 면이 있음. 금융·제조물·의료 등 여러 분야 등 다방면의 문제 해결 및 소비자 분쟁 해결·조정을 위한 전문성 있는 별도의 부서 설립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심상정	찬성	
유승민	찬성	· 소비자문제는 소비생활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생활화학제품 및 시설물 안전 사고로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바, 소비자 안전 문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한 분야 이지만, 현재 공정위의 업무와 조직으로는 소비자 안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부처 간 정책조정 및 협조가 가능하도록 소비자업무를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소비자제품 안전정책은 공정위에서 수행할 수 없으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제품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기준설정, 인증, 검사, 리콜 등 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실질적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2) 집단소송제 도입

- ① 현행 소송절차를 통해서도 기업의 위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효율적인 구제가 가능하다.

문재인	반대	
안철수	반대	
심상정	반대	
유승민	반대	약자인 소비자가 강자인 기업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기는 어렵고 승소하기는 더욱 어려우며 소송비용의 부담이 큰 만큼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할 수 있게 해서 손해배상규모가 커지면, 능력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피해 소비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 확보에 나서게 될 것이며, 기업들의 불법, 불공정 행위가 억제될 것임

- ②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소비자 분야, 환경 분야, 노동 분야 등) 모두

에 적용되는 집단소송법을 제정해야 한다.

문재인	기타	
안철수	찬성	
심상정	찬성	
유승민	찬성	사후적으로 보상을 받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집단소송제 같은 것을 해서 잘못된 제조물의 피해로부터 피해를 당한 모든 소비자들이 그 중에 한사람만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을 이긴 효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를 활성화해야 하며, 특히 안전, 생명, 재산, 소비자 보호, 안전사고 등 다른 분야로 확산을 해서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은 집단소송제를 통한 징벌이 필요함

③ 소비자분야에만 한정되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문재인	찬성 기타	집단소송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단체소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단체소송이 도입되어 있으나, 현재 소송법제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집단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구제를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집단소송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소비자피해 영역'에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음. 다만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에 도입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안철수	반대	
심상정	기타	원칙적으로 소비자, 환경, 노동 등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포괄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소비자 부문에 한정되는 집단소송제의 우선 도입 추진에 반대하지 않음. 특히 소비자 부문에서 대규모 피해가 빈발하고, 소비자라는 지위의 특성 상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제도가 확보돼 있지 않아 소비자 분야의 도입이 시급함.
유승민	반대	사후적으로 보상을 받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집단소송제 같은 것을 해서 잘못된 제조물의 피해로부터 피해를 당한 모든 소비자들이 그 중에 한사람만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을 이긴 효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를 활성화해야 하며, 특히 안전, 생명, 재산, 소비자 보호, 안전사고 등 다른 분야로 확산을 해서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은 집단소송제를 통한 징벌이 필요함

3) 징벌배상제 도입

-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고,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반법 제정’에 의한 징벌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문재인	기타	
안철수	반대	
심상정	찬성	
유승민	찬성	징벌적 배상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건강, 생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번 가슴기 살균제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 ② 징벌배상 관련 일반법을 제정할 필요 없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하도급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에 포함하면 된다.

문재인	기타	
안철수	찬성	
심상정	반대	개별법에도 징벌배상 조항을 포함해야 하지만 일반법 제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님.
유승민	반대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법, 불공정 행위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2017년 3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제조물 책임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시키는 데 합의하는 등 개별법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포함하고 있는 만큼 각 개별법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임

③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상한을 3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문재인	기타	
안철수	기타	현재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 경영상의 고려 등 기업에 유리한 감경사유가 남발되고 있음. 이러한 법원의 소극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관행을 개선하고 기업에 의한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효과와 소비자 피해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심상정	반대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공적 책무를 다 하지 못하면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유승민	반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사업자의 범위반 억지 측면 등에서 3배 이상의 징벌배상제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도입·적용이 적합한 분야 및 적용 조건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④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는 법적 상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문재인	기타	우리나라 손해배상법제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보(填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다만, 2011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 도입된 것을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에서 도입되었고, 최근에는 ‘제조물책임법’에 도입되어 국회본회의를 통과되었음(17.03.30). 소비자들이 원활하고도 충분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소비자 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음.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 다른 분야로 확대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판단해야 함.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재대로 3배로 할 것인지, 이를 더 증액할 것인지는 ‘기업의 부담’과 ‘피해자 구제’ 사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안철수	반대	
심상정	기타	생명 또는 신체 피해에 비례한 법적 상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유승민	찬성	일반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적용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생명의 손상, 신체에 대한 손상은 가족과 개인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으로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가족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이렇게 될 때 인명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4) 소비자입증책임 전환

① 사업자의 고의·과실 불법행위인해,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한 분야(의약품, 의료, 식품 등)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을 도입해야 한다.

문재인	찬성	
안철수	찬성	
심상정	찬성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과실입증을 사업자(제조업자)가 하는 경우에는 과실을 제한적으로 허용
유승민	찬성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을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최근의 법리 추세이며, 국제적인 동향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제품을 제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무과실 책임은 도입되어야 함

②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피해(제조물책임)에 대하여, 이의 입증책임을 제조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문재인	찬성	답변 내용 없음
안철수	찬성	답변 내용 없음
심상정	찬성	답변 내용 없음
유승민	반대	현재의 제조물책임법에서도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사업자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음. 제품의 결함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증하면 됨. 단,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 소송도 많지 않고 승소확률도 높지 않은 상황. 따라서 소비자의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 제도) 즉 제조업자에게 제품 생산과정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받게끔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의 책임을 높이고 실질적인 피해보상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 사안마다 제조업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기업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임

5)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기소)를 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

문재인	찬성	
안철수	찬성	
심상정	찬성	
유승민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강자의 횡포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11개나 있지만, 이 법률들이 실효성 있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공정위는 연간 4,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하면서 많은 사건들이 부실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의무고발제 역시 결국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공정위의 법집행 독점체제를 끝내고, 피해자가 직접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함.

② 검찰,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 등 4개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 고발을 해야 하는 '의무고발제'는 실효성이 있다.

문재인	반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소극적 행사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 의무고발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효성은 여전히 미흡. 전속고발권은 폐지하고, 불공정 거래의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해야 함.
안철수	반대	
심상정	반대	
유승민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의무고발제'는 검찰,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이 공정거래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면 약간의 실효성은 있었을 것이나, 2014~16년 중기청의 고발 요청은 단 16건에 불과하며, 현재의 의무고발제가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원칙적으로, 피해사업자라면 누구든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당함

※ 반복되는 기업의 위법행위로부터 소비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p>문재인</p>	<p>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 제조물 등 소비자피해 영역'에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겠음</p> <p>생활 속 화학제품의 다양성으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 소비자제품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살생물질과 상생물질 함유제품의 통합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 같은 생활 속 화학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음</p> <p>소비자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적 안전점검을 제도화하겠음. 원료물질과 소비자 제품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책임행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임. 화학물질 함유 소비자제품에 대한 등록·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일차적 책임을 제조·판매업체에 부과하도록 하며, 당국에는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음</p> <p>소비자 제품 중 화학물질 정보공유에 기반을 둔 사회적 신뢰기반을 구축하겠음. 특히 위해 우려제품 성분등록제를 도입하여, 전성분표시제 대항 품목의 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할 것임. 어린이용품 성분등록제 및 안심마크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겠음</p> <p>화학물질 피해보상 체계를 정비해 신속한 보상이 보장되도록 하겠음. 석면,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으로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사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일반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음</p> <p>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속고발권 제도는 폐지하고 불공정거래의 피해자와 피해자단체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하겠음</p>
<p>안철수</p>	<p>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의 대형화·광역화·집단화 되어 감에 따라 개별적 분쟁해결에만 초점을 둔 종래의 민사소송제만으로는 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보듯 소비자집단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함 · 소비자집단소송의 범위를 현행 증권 외에 제조물·공정거래·금융·환경 등으로 확대 · 소비자피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증거개시절차(discovery)에 준하는 입증책임 경감 · 징벌적 손해배상제(punitive damage) 도입
<p>심상정</p>	<p>공정거래법 상의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 일반집단소송제, 소비자피해구제명령제, 사인 금지청구제</p>
<p>유승민</p>	<p>위에 제시된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공정위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구제'(계약취소, 환불, 교환 등)를 명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를 도입하겠음</p>

2. 시청자 권리 보장

1) 공영방송 정상화

① 집권세력에 의한 공영방송 이사회 장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야 이사추천 비율을 조정하고, 이사회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인	찬성	방송법을 비롯한 현행 관련법은 여야추천권한이 너무 정부여당 위주로 편향돼 있는 관계로 정권차원에서 개입할 경우 언제든지 방송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됨. 최소한의 공영성 담보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은 시대의 요구임.
안철수	찬성	
심상정	찬성	정권이 바뀌더라도,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반드시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유승민	찬성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는 일은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집권세력에 의한 공영방송 이사회 장악 방지를 위해 여야 이사추천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함. 방송관련 협단체, 학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가 일정 정도 이사로 등재하여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임

② 방송사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취재 및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종사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문제인	찬성	편성위원회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노사 단협 규정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실제 지난 10년 공영방송의 경우 회사 쪽이 단협을 무력화할 경우 실효성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했음. 이에 더 강력한 자율성 보장과 신장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함.
안철수	찬성	
심상정	찬성	
유승민	반대	방송사에 대한 부당간섭과 취재 및 제작 자율성 침해가 현재의 편성위원회 규약이 잘못되었거나 편성위원회 구성 비율이 잘못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편성위원회 규약만 잘 지켜도 부당간섭과 취재, 제작 자율성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시청자위원회의 감시와 견제기능 역할 또한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규약을 강화하거나 편성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하기보다 규약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 개선해야 할 것임

③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이사회 재적 ⅔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야 한다.

문제인	찬성	공영방송의 사장이 갖는 사회적 위상을 고려할 때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한 심도 깊은 자질 검증은 필수적임. 더불어 특별다수제 도입은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게 돼 일선 편성·제작 종사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됨.
안철수	찬성	
심상정	찬성	
유승민	찬성	공영방송의 가치와 의무에 우선점을 둔 전문 경영인이 아닌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제안된 위 내용에 동감함.

④ 공영방송 이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회의와 자료의 공개 원칙을 수립하고,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자료의 경우에도 임기 만료 시에는 일괄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문제인	찬성	공영방송 이사회는 국민이 세운 공영방송의 경영과 예·결산을 감독·관리하는 기구로 방송의 공영성과 공공성을 수시로 묻고, 요구하는 기구임. 공영방송의 최고 의결기구가 이사회라면, 이사회는 그 권한을 부여한 국민에게 활동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음.
안철수	기타	일반 회의내용이나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찬성함 다만, 엄격한 기준을 전제로 경영상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나 자료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하고, 이런 자료의 경우 이사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일정기간 공개 예외 기간을 두어야 할 것임. 그렇다라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심상정	찬성	이 외에도 이사회 의사일정을 사전에 방송사 및 소관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사회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유승민	기타	경영상 민감한 정보들도 공개될 수 있는 만큼 정보공개법 9조를 준용하여 해당 방송사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와 정보의 종류별로 의무공개 시기를 명시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회의와 자료 공개 외 방송사 간 공정 경쟁을 위한 경영 전략차원에서의 회의와 자료 공개에 한해 제한할 필요가 있음

⑤ 공영방송 장악 및 언론인 탄압 진상규명을 위하여 언론장악 청문회 등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언론해직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

문제인	찬성	국경없는기자회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세계언론자유지수가 2007년 36위에서 2016년 70위로 끝없이 추락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정권의 언론장악과 언론인탄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임. 따라서 두 보수정권 기간 자행된 언론장악에 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며, 부당하게 해고·징계된 언론인들에 대한 원상회복과 명예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안철수	기타	부당한 사유로 해직된 언론인에 대한 즉각적인 복권과 복직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임. 공영방송 장악 및 언론이 탄압에 대한 청문회는 대상기관, 증인, 방식, 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심상정	찬성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 직속 한시적 기구로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언론의 자유 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②공정보도를 주장하다 부당 징계·해고당한 언론인 및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 보상과 명예 회복, ③방송의 공정성·독립성과 시청자의 권한 확대를 위한 개혁과제 구체화 및 로드맵 마련을 할 것임.
유승민	찬성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운영 등 박근혜 정권의 파행적인 국정운영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러한 영향을 조사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여야가 추천한 공영방송 쟁점 조사위원회, 언론 쟁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그 문제들을 중심으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할 것임

2) 시청자위원회 강화와 유료방송 권리보장

①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만 부여된 위촉권한을 다원화하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문제인	찬성	옴부즈만제도의 도입은 시대의 요구였고, 그에 따라 법령으로 명시돼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유명무실화 된 것이 사실. 위상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안철수	찬성	
심상정	찬성	사무국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청자 불만처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청자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유승민	기타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방송사업자에게만 시청자위원회 위촉권한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제기된 것처럼 위촉권한을 다원화하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함. 다만 다원화된 위촉권한이 자칫 또 다른 세력에 대한 공영방송 종속 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다원화 위촉권한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② 유료방송에도 매체 특성에 따라 상품의 가격, 채널 구성의 변경, 약정 기한, 가입자 정보관리 등 상품서비스 구성 및 품질에 관하여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한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문제인	찬성	유료방송 시장을 포함하는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가 필요하며, 통합방송법은 유료방송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안철수	찬성	
심상정	찬성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에 대해서도 위 ①과 같이 위촉 권한을 다원화하고 시청자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유승민	찬성	어떤 방송이든 구성과 품질에 관한 의견제시와 시정요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런 기본 방향에 따라 유료방송 역시 시청자의 권리보호는 물론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방송제작을 통해 진실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3) 지상파 직접 수신을 제고 및 다채널 서비스 전면 실시

① 지상파 직접수신율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하여 기한을 정하여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문제인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율 개선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소규모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모두를 포함하는 전국적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 필요 · 지상파방송은 보편적 서비스로 공적 정보의 제공과 재난재해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상파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공시청설비의 훼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신환경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보조국의 디지털 전환지원이나 공청망 개선 사업 지원 등에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야 함 · 전체 가구 중 대도시를 중심으로 48%의 가구는 실내 안테나만으로도 직접수신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홍보 및 실내 안테나 배포 확대 실시
안철수	찬성	
심상정	찬성	지상파 UHD방송 도입에 있어 안테나 내장 TV 출시를 의무화하는 등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핵심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또한 기술적 측면의 수신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에 의존하지 않고도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상파의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유승민	찬성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수신환경이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수신환경문제로 인해 공영방송 시청이 어려운 시청자들이 손쉽게 요청을 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②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전면 허용하고, 공영방송부터 조속히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문재인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재난 채널 운영으로 기상이변, 재난에 대한 상시 대비 체제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고, 무료 방송 서비스 수혜가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 · 각 방송사에 채널 운용 자율권을 보장해 필요에 따라 고화질 HD 서비스, 부가채널을 활용한 3DTV 서비스, 다채널 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해 매체 경쟁력 강화와 시청자의 선택권 확보를 동시에 추진
안철수	찬성	
심상정	찬성	<p>무료 보편 서비스로서 지상파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다채널 서비스 확대가 필요함. 다만,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상파의 자원 구조가 열악해지고 있어 준비 없이 다채널 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낮은 콘텐츠 품질 등으로 오히려 시청자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개선과 함께 지상파, 유료방송, 신문, 포털, OTT 등을 아우르는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p>
유승민	반대	<p>공영방송의 채널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널의 다양화는 프로그램의 증가로 인한 자원의 보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수신료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합의가 필요해 보임. 오히려 기존 채널의 경쟁력 강화와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음</p>

※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p>문재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언론장악방지법 개정 적극 찬성 2. 종합편성채널 특혜 제거법 개정 적극 찬성 3. 방송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4. 지상파 민영방송의 소유구조 · 지배구조 개선 5. 지상파 지역방송 위상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6. 시청자위원회 노사합의 구성 7.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을 제고 및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도입 8. 수신료위원회 설치 적극 검토
<p>안철수</p>	<p>공영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객관성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한 해결 과제임.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방송법 등 방송장악방지 4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p> <p>또한, 지상파 방송에 관한 방통위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방송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여당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방심위 위원 구성을 선거방송위원회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순수 민간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할 필요가 있음</p>
<p>심상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통령 직속 한시적 기구로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 ② 방송·미디어를 포괄하는 독립행정위원회 설치 - (가칭)미디어위원회 · 미디어위원회 위원 자격 강화, 대통령 및 행정부의 위원 추천권 배제, 위원 구성에 여성 및 지역 할당제 도입 등 ③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④ 종편에 대한 특혜 철폐 및 편성의 다양성과 공익성, 경영건전성 강화. 종편 채널 4개를 모두 의무전송하는 규정을 선택적 의무전송으로 변경 ⑤ 표현의 자유를 위한 방송심의제도 개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행정심의를 최소화하고 대부분 자율규제로 전환, 방송사 자체심의 권한의 일부를 시청자위원회에 부여 ⑥ 유료방송의 지역별 시청자위원회 구성 의무화, 시청자위원회 권한 강화, 방송사 노사 동수 추천으로 시청자위원 선임 ⑦ 통합적 미디어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및 시청자의 방송 참여 확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⑧ EBS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및 평생학습권 보장 ⑧ 유료방송산업 설치·수리 및 장애신고접수·상담 업무 하도급 금지,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기준에 방송의 공공성·지역성 항목 강화, 유료방송 플랫폼 특성에 맞는 공적 책무 부여 및 이행 지원
<p>유승민</p>	<p>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고품질의 보편적 시청권리 강화정신을 기본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 위에서 제기한 이사추천의 구성, 시청자위원회의 권리강화, 지상파의 채널 경쟁력 강화방송 등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라는 기본 정신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음</p>

3. 통신이용자 권리 보호

1)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① 불법적이지 않은 게시물에 대한 심의 기구의 유해성·건전성 심의는 폐지해야 한다.

문제인	찬성	심의와 제재의 근거가 되는 심의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자의적 해석에 따른 심의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심의규정과 이에 근거한 제재조치는 위헌의 소지가 큼. 특히 공정성 심의는 판단 주체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어 정치적 구도에 의해 비판 목소리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
안철수	찬성	
심상정	찬성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ICT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조건이기도 함.
유승민	찬성	인터넷의 속성상 모든 콘텐츠를 다 심의할 수는 없다. 최근 이슈가 된 가짜뉴스, 콘텐츠 불법유통,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인터넷 해킹 등의 다양한 사이버 범죄들은 고발에 의해 수사를 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바람직함

② 인터넷 상 표현을 법원의 판단도 없이 의무적으로 삭제, 차단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명령권은 폐지해야 한다.

문제인	찬성	
안철수	찬성	
심상정	찬성	대통령 및 정부기관에 관한 인터넷 상의 비판에 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적용을 남발하는 것 또한 제한해야 함.
유승민	기타	· 삭제 명령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과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으로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대신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은 명예훼손죄로 엄히 처벌해야 하며,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가칭)가짜뉴스 방지법을 제정하여 처벌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해야 한다.

문재인	찬성	인터넷 행정심의회는 폐지해야 함.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안철수	기타	현재도 포털사업자, 통신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임시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방송과는 달리 다양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신 심의 내용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칫 선택적 표적 심의가 진행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통신 심의의 경우 민간자율에 맡기고 문제 발생시 강력한 사후 규제로 전환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심상정	찬성	
유승민	찬성	원칙적으로 심의를 폐지하고, 고발에 의해 수사를 하고,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함

2) 통신비밀보호 강화

① 통신사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정보수사기관에 가입자정보(통신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문재인	기타	
안철수	찬성	
심상정	찬성	
유승민	기타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국가 안보, 막대한 국부 유출, 인명살상 등 심대한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에 신고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함. 단, 수사결과에 대해 사후 법원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보 제공을 막아야함

② 대상자에 대한 특정 없이 특정 시점에 특정 기지국에 접속한 모든 이용자의 통신 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을 제공받는 '기지국 수사'와 같은 수사기법을 제한해야 한다.

문제인	찬성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자의 정보를 손쉽게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전기통신사업법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음. 특히 영장 등에 의한 사전통제를 받지 않고 통신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에게 그 취득사실을 통지하는 등 사후통제 시스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허술한 규정으로 인하여 현재 무분별하게 국가의 통신자료취득이 이뤄지고 있음. 최소한 가입자에게 '사후적 통지'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전통제 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안철수	찬성	
심상정	찬성	위치정보 제공과 관련된 규제 완화 정책을 폐기하고, 국민들이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사찰이나 기업의 타겟마케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함.
유승민	기타	·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① 번과 같이 국가 안보, 막대한 국부 유출, 인명살상 등 심대한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에 신고만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단, 기지국을 경유한 모든 통신내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가입자와의 통신에 관련된 내용만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사후 법원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보 제공을 막아야 할 것임

③ 메신저, 이메일 등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내용의 경우에도 감청 수준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정보주체가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참여권과 이의제기권을 보장해야 한다.

문제인	찬성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메일 압수·수색·검증은 법원의 영장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혐의와 무관한 장기간의 이메일이 제공되기 일쑤이며, 혐의와 무관한 장기간의 이메일이 제공되기 일쑤이며, 제3자인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사전통지나 참여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함.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현한 국민의 이메일이 장기간에 걸쳐 압수돼 사상검증과 다름없는 추궁을 받는 상황은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통신의 비밀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임.
안철수	찬성	
심상정	찬성	
유승민	기타	·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① 번과 같이 국가 안보, 막대한 국부 유출, 인명살상 등 심대한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에 신고만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단,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사후 법원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보 제공을 막아야 할 것임

※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디지털 기기 안에 개인의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카카오톡과 같은 다대다 통신이 가능해지면서 하나의 감청이나 압수수색만으로도 그 대상자는 수백, 수천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보사회에서 이용자의 통신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문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감청과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 영장이나 허가 뒤 실행 · 허가 시 당사자에 대한 통지와 참여권 보장 · 허가 시 범죄수사와의 관련성 및 보충성에 비추어 법원의 엄격한 심사 및 감청 집행 시 법원 입회 감독 · 피의자와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패킷 감청, 기지국 수사 금지
안철수	위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함 국민 통신자유 보장을 위해 기관의 개입을 사전에 제재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이를 위해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통신자료 제공 시 영장주의 확립, 통신 감시 조치시 통신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고 개선, 패킷감청·RCS 방식 감청 금지, 통신 압수수색 적부심제도 마련 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
심상정	
유승민	원칙적으로 통신비밀의 보호는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단 ① 번과 같이 국가 안보, 막대한 국부 유출, 인명살상 등 심대한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에 신고만으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한 수색의 범위를 최소화해야 하며,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사후 법원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통신비밀 침해를 막아야 함

3)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① 요금인가 과정에서 제출된 통신원가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여 통신요금 인가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개절차로 전환해야 한다.

문제인	찬성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대선 당시 “통신요금 책정 과정 투명화”를 공약했음. 또, 2014년 지방선거 때 “통신비 산정을 투명화하고, 요금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가칭) 통신요금검증 위원회 설치”를 공약했음
안철수	찬성	
심상정	찬성	통신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용자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유승민	반대	· 규제의 철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과도 같으며, 요금인가 등 후진적인 제도는 없어져야 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요금인가 제도 보다 알뜰폰 및 선불전화기 확대, 제4 이동통신사 허용 등을 통해 사업자간의 자유경쟁을 유도함으로

		<p>써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주의 경제에 부합하는 정책임. 이와 관련해서는 '13년 참여연대 등이 미래부를 상대로 소송제기하여 대법원 상고 진행 중인 사안(1, 2심 참여연대 부분승소)으로 대법원의 판결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음
--	--	---

② 알뜰통신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등 알뜰통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기타	검토 필요
안철수	찬성	
심상정	찬성	단기적으로는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인하 등의 정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성장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과금시스템 구축, 이통사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등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유승민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번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정책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보호하는 것보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알뜰통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대가는 '12년 대비 평균 60% 인하되는 등 꾸준히 인하되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낮은 도매대가는 네트워크 투자 위축 및 자격을 갖추지 못한 알뜰폰 사업자의 난립 및 퇴출 등으로 이용자 피해 발생 위험이 있음 · 알뜰폰 업계가 아직 적자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필요함

③ 망 설치 및 관리비용이 회수된 서비스에 대해 기본료 인하 또는 폐지해야 한다.

문재인	찬성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대선 때부터 “기본료 폐지”를 공약하고 있음
안철수	찬성	
심상정	찬성	기본료를 포함해 요금 인하하는 데 동의. 그러나 인하 대상을 기본료에 한정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음.
유승민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나 국회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 등은 통신사업자가 기술개발을 통하여 이익을 증대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기술개발에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통신사업자의 과감한 연구개발 및 5G 등 신규망 투자가 장려되어야 함 · 현재 약 1만원 정도의 기본료를 인하하게 되면 이통3사의 매출이 7조원 감소하며, 대부분의 이통사가 영업적자 상태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투자를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주의 경제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소비자 보

		호는 경쟁유도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④ 제조사의 단말기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 약정 보조금을 분리 공시해야 한다.

문재인	찬성	고가 단말기 가격 투명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 총선 공약으로 “분리공시제 도입”을 제기했음
안철수	찬성	
심상정	찬성	이 외에도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금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선택약정할인 확대 등의 정책 필요. 유통점에 대한 통신사의 압질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질서 확립 필요.
유승민	찬성	판매장려금과 약정 보조금은 제조사와 이동사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양사의 보조금을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의 영역이 아니므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사 간의 밀접한 구조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어긋나는 것으로 분리 공시를 통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⑤ 과도한 이동통신 위약금을 규제하기 위한 위약금상한을 정해야 한다.

문재인	기타	검토 필요
안철수	찬성	
심상정	찬성	
유승민	기타	비현실적으로 과도한 이동통신 위약금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LG U+ 의 경우 3대 통신사 중 이미 위약금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음. 위약금상한제를 시행하되 금액은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사업자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규제업무에 관여하거나, 자율규제형식으로 통신산업의 중요 공공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문재인	기타	검토 필요
안철수	기타	법정단체로서 최소한의 사업자간 자율적 규제를 통한 자정노력은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심상정	찬성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자율규제 영역은 회원사들 간의 공정거래 등으로 제한되어야 함.

유승민	반대	과거 통신 3사만이 통신사업을 하던 과점 상태에서는 유효한 정책이었으나 이제 알뜰폰 가입자가 700만을 넘는 지금은 유효하지 않으며, 제4이동통신사 허용, 선불전화기 확대 등 자유로운 경쟁을 확대하면 시장의 자율적인 규제에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을 것임
-----	----	---

※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문제인	<input type="checkbox"/> 기본 정책 1. 기본요금 폐지 2.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단통법 개정) 3. 고가 단말기 가격 투명화 유도(분리공시제 도입) 4. 단말기 유통시장 혁신(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5. 주파수경매 때 통신비 인하 노력 반영 6.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 '슈퍼 와이파이' 설치 7. 모든 공공시설 공공와이파이 의무설치 및 지속적인 확대 <input type="checkbox"/> 중장기 정책 ※ 실질 가계통신비 인하 유도가 어려울 경우 대책 1. 2020년 상용화 예정인 5G 국가기간통신망을 공공서비스로 구축
안철수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 등 직접적인 인하 정책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 무료 데이터통신 확대 등 다각적인 방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 2G·3G 가입자 기본료 폐지 유도 2. 주파수 경매 수익 및 전파 사용료 징수 제도 개선 3.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위약금 상한제 신설, 선택요금제 할인율 30%으로 확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등 단통법 개선 4.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제4이동통신 설립 추진과 알뜰폰 활성화를 지원 5. 공공 무료 와이파이 및 망중립성·제로레이팅 활성화
심상정	①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고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 이동통신 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보편적 의무'로 지정 · 데이터 2기가와 음성·문자 무제한 사용을 저렴한 요금으로 보장 · 1인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 통계를 기준으로 2년에 한 번씩 통신비심의위원회에서 2년에 한 번씩 보편요금제의 서비스 기준과 요금 수준 결정 ② 주파수 경매, 전파사용료 등의 개선으로 요금 인하 · 공공재인 주파수 경매 대가, 전파사용료 등 통신비 원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비용 구조개선 ③ 제4이동통신 도입으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④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전파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통해 산업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시키고, 이후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질적 투자와 혁신 중심으로 지원 방향 전환
유승민	알뜰폰 가입자 증대, 선불전화기 확대, 그리고 제4 이동통신사 허가 등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결합상품의 개발 등을 통하여 자유로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것임

4. 개인정보 권리 강화

1)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① 빅데이터 시대에서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법제를 완화해야 한다.

문제인	반대	인터넷 서비스 등에서 민간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함. 신용정보업체와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본인확인 명목으로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는 것 또한 중지되어야 함. 위험적으로 구축된 본인확인정보는 폐기되어야 함.
안철수	기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분야가 빅데이터산업임.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활용과 제공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은 있음. 하지만, 완벽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담보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무차별적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은 허용할 수 없을 것이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심상정	반대	
유승민	찬성	4차 산업혁명의 요체는 빅데이터이며, 이는 지나치게 엄격한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완화가 필수적임

②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수집·이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인	반대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함.
안철수	기타	익명처리 등 개인정보 재식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봄.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수준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 제공은 문제가 있음
심상정	반대	
유승민	찬성	앞과 같은 이유로 찬성하지만, 비식별화된 정보가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관이 필요함

③ 개인정보를 판매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문제인	반대	개인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금지해야 하나, 그 전에 앞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관련 법 개정은 필요.
안철수	기타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개인정보 거래가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포털, 통신사 등 거대 기업임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를 매개로 한 부의 집중 가속화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개인정보의 주인인 정보주체의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양면성이 존재하므로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안이라고 사료됨
심상정	찬성	
유승민	찬성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수임

④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령으로 명시해야 한다.

문제인	기타	검토 필요
안철수	찬성	
심상정	반대	비식별조치를 했느냐의 여부로 구분해서 비식별화를 거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약화시키거나 예외로 두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함. 또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으로도 목적 외 이용 등을 허용하고 있어 별도로 비식별조치를 법제화할 이유가 없음.
유승민	반대	규제의 최소화란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단,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음

2)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 ①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개인정보 생성, 수집과 집적, 이용을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총괄부처로서의 업무도 담당해야 한다.

문제인	반대	<p>전기통신사업자를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감독하고, 그 밖의 민간 부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행정 조치를 하고 있음.</p> <p>그러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여전히 매년 계속되고 있고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한 번 유출되면 평생 반복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만, 정보주체의 피해에 대한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p> <p>따라서 심의 기능으로 제한돼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 등 초국적 IT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다른 나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활동을 참고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감독 권한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p>
안철수	반대	
심상정	반대	<p>행정자치부 자체가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감독 대상이 되어야 하는 부처임. 감독 대상이 감독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감독이 되기 어려움.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다수의 안전 및 프라이버시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기구가 감독 권한을 갖는 것이 타당함.</p>
유승민	기타	<p>개인정보 보호는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행정자치부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학기술, ICT를 총괄하는 거버넌스 조직의 신설한 후 이 기구 산하에 관련 조직을 둘 것을 제안함</p>

- ②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이관해 민간과 공공부문을 통합한 실질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문제인	찬성	상동
안철수	찬성	
심상정	찬성	
유승민	기타	<p>개인정보 보호는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과학기술, ICT를 총괄하는 거버넌스 조직의 신설한 후 이 기구 산하에 관련 조직을 둘 것을 제안함</p>

3)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①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문제인	기타	검토 필요
안철수	반대	
심상정	찬성	
유승민	기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사고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의 일시적 변경을 허용하고 피해규모를 줄여나가야 함

②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해야 한다.

문제인	기타	검토 필요
안철수	찬성	
심상정	찬성	
유승민	찬성	개인의 생일, 출신지 등의 정보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개인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③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1,000여개의 법령을 최소화하고, 조세번호 등 목적별 번호의 사용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문제인	기타	검토 필요
안철수	찬성	
심상정	찬성	
유승민	찬성	유통되는 정보를 최소화하는 정책적인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으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들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주민등록번호 제도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서비스 등에서 민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원칙적으로 금지 · 신용정보업체와 이동통신사가 본인확인 명목의 예외적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 중지 · 위협적으로 구축된 본인확인정보 폐기 · 정보통신 분야 소비자들의 동의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관련 법 개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및 권한 확장으로 민간 부문 개인정보 보호 감독
안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빅데이터 활용은 재식별이 가능한 비식별화 정보가 아니라, 익명화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활용 하도록 하고 · 빅데이터 산업 진흥정책과 균형을 맞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그 활용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법령을 정비하겠음
심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분별한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을 방지하는 개인정보보호 규범 재정립 ·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지 및 정보주체 동의 없는 비식별정보 활용 금지 ·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한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대폭 강화 등
유승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주민등록번호에 다양한 정보를 담아야 했지만 통신의 발달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조회가 가능해진 만큼 주민등록번호에 다양한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으며, 사이버 해킹의 증가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빈번한 만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특단의 조치에는 상기 질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일시적 변경 허용, 개인 확인 방법의 다양화(휴대번호, 여권번호 등) 세 가지 사항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